



제18627호 2015. 10. 30.(금)

【대 통 령 령】

- 대통령령제26611호(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) 5
- 대통령령제26612호(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) 9

【부 령】

- 기획재정부령제506호(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) 9
- 기획재정부령제507호(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) 10
- 행정자치부령제40호(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)..... 11
- 행정자치부령제41호(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)..... 17
- 행정자치부령제42호(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)..... 18
- 산업통상자원부령제162호(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)..... 24
- 보건복지부령제361호(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) 28
- 환경부령제615호(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) 28
- 환경부령제618호(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) 69
- 교육부령제76호(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)..... 69

【고 시】

- 교육부고시제2015-233호(2016년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산정기준) 71
- 법무부고시제2015-308호(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등록 요건 및 절차) 71
- 법무부고시제2015-317호(부동산의 투자지역, 투자대상 및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) 73
- 국방부고시제2015-389호(국방·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..... 76
- 국방부고시제2015-390호(국방·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..... 77
- 국방부고시제2015-391호(국방·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) 77
-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-224호(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) 85
-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-225호(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)..... 94
-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-226호(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요령 폐지) 99
-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-227호(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·운영) 99
-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-228호(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<변경>) 101

(이면 계속)

발행 행정자치부 문의 ☎ 2100-3345, 2100-3346
110-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

다. 등록 및 심사 절차

(1) 등록신청

○ 등록기관 및 장소

-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,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,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,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,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,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,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,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,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,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,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,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,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역출장소,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출장소 등 지정된 장소

○ 신청 준비물

- 복수여권(공통), 외국인등록증(등록외국인), 국내거소신고증(외국국적동포), 승무원등록증(승무원), 복수상륙허가서(승무원)

○ 생체정보 등록

- 지문등록은 원칙적으로 양손 집게손가락 지문을 사용
- 단, 지문 훼손 등으로 곤란한 경우 엄지손가락, 가운데손가락, 약손가락, 새끼손가락의 순으로 등록
- 얼굴정보는 정보화기기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반신 정면 얼굴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등록

(2) 심사 및 처리기간 : 즉시 처리

(3) 등록된 외국인의 출입국심사대 이용방법

- 자동출입국심사대가 설치·운영되고 있는 공항만(인천국제공항, 김포국제공항, 김해국제공항, 제주국제공항, 청주국제공항,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)을 이용하여야 함
- 등록된 외국인은 출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대 또는 일반심사대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음
-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외국인이 자신의 여권에 출입국심사인 날인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요청하여 심사인 날인을 받을 수 있음
- 출입국정책상 필요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을 일시정지 조치할 수 있으며, 이용 불가시 일반심사대를 이용하여야 함

4. 시행일 : 2015. 11. 1.

●법무부고시제2015-317호

부동산의 투자지역, 투자대상 및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

「출입국관리법시행령」 별표1의 제27호 거주(F-2)의 체류자격 '차'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,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5년 10월 30일

법무부장관

1.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

[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·수하리 일원]

가. 투자대상

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승인하여 지정한 ‘대관령알펜시아관광단지’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

- ① 건축법시행령(별표1 제15호 ‘나’목) 및 관광진흥법(제3조제2호 ‘나’목)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
- ② 건축법시행령(별표1 제15호 ‘가’목)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
- ③ 지방세법(제13조제5항제1호) 및 시행령(제28조), 소득세법(제104조의3제1항제6호) 및 시행령(168조의13), 법인세법(제55조의2제2항제6호) 및 시행령(제92조의10)에 따른 별장
 - ※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(F-2)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에 서 제외됨
- ④ 건축법시행령(별표1 제15호 ‘라’목) 및 관광진흥법(제3조제7호)에 따른 관광펜션

나. 투자금액 : 5억 원 이상

다. 시행기간 :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

2.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, 영종지구, 청라국제도시

[인천광역시 중구, 연수구, 서구 일원]

가. 투자대상

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,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·승인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, 영종지구, 청라국제도시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

- ① 건축법시행령(별표1 제15호 ‘나’목) 및 관광진흥법(제3조제2호 ‘나’목)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
 - ② 건축법시행령(별표1 제15호 ‘가’목)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
 -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(제9조의3),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(제3조제2항제8호 ‘마’목) 및 지식경제부 고시(제2012-323호)에 따라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
 - ④ 지방세법(제13조제5항제1호) 및 시행령(제28조), 소득세법(제104조의3제1항제6호) 및 시행령(168조의13), 법인세법(제55조의2제2항제6호) 및 시행령(제92조의10)에 따른 별장
 - ※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(F-2)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에 서 제외됨
 - ⑤ 건축법시행령(별표1 제15호 ‘라’목) 및 관광진흥법(제3조제7호)에 따른 관광펜션
 - 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는 주택 (단, ‘14.9.30. 현재 및 ‘15.9.30.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함)
- 분양계약이 해제된 주택 및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명의로 최초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주택도 대상에 포함

- 1.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107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
- 2.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주택의 시공사
- 3.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, 제1호의8 및 제1호의10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
- 4.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, 제1호의9 및 제1호의11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탁업자

-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투자이민으로 인한 거주(F-2) 체류자격을 받는 시점은 임대기간 종료 후 공실이 된 때로 함

나. 투자금액 : 7억 원 이상

다. 시행기간 :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

3. 제주특별자치도

가. 투자대상

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29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‘관광단지 및 관광지’ 지정을 받은 사업지역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

- ① 건축법시행령(별표1 제15호 ‘나’목) 및 관광진흥법(제3조제2호 ‘나’목)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
- ② 건축법시행령(별표1 제15호 ‘가’목)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
- ③ 지방세법(제13조제5항제1호) 및 시행령(제28조), 소득세법(제104조의3제1항제6호) 및 시행령(168조의13), 법인세법(제55조의2제2항제6호) 및 시행령(제92조의10)에 따른 별장
 - ※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(F-2)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에서 제외됨
- ④ 건축법시행령(별표1 제15호 ‘라’목) 및 관광진흥법(제3조제7호)에 따른 관광펜션

나. 투자금액 : 5억 원 이상

다. 시행기간 : 2015년 11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

라. 경과규정(신설)

- ① 2016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고시에 따라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29조에 따른 도지사의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얻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투자대상 부동산으로 본다.

4. 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

[전남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]

가. 투자대상

「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」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정·고시한 ‘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’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

- ① 건축법시행령(별표1 제15호 ‘나’목) 및 관광진흥법(제3조제2호 ‘나’목)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
- ② 건축법시행령(별표1 제15호 ‘가’목)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
- ③ 지방세법(제13조제5항제1호) 및 시행령(제28조), 소득세법(제104조의3제1항제6호) 및 시행령(168조의13), 법인세법(제55조의2제2항제6호) 및 시행령(제92조의10)에 따른 별장
 - ※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(F-2)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에서 제외됨
- ④ 건축법시행령(별표1 제15호 ‘라’목) 및 관광진흥법(제3조제7호)에 따른 관광펜션

나. 투자금액 : 5억 원 이상

다. 시행기간 :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

5.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, 동부산관광단지

[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일원,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·연화·대변·당사·청강리 일원]

가. 투자대상

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, 제7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승인하여 지정한 ‘해운대관광특구’ 중 ‘해운대관광리조트’ 및 ‘동부산관광단지’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

- ① 건축법시행령(별표1 제15호 ‘나’목) 및 관광진흥법(제3조제2호 ‘나’목)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
 - ② 건축법시행령(별표1 제15호 ‘가’목)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
 - ③ 지방세법(제13조제5항제1호) 및 시행령(제28조), 소득세법(제104조의3제1항제6호) 및 시행령(168조의13), 법인세법(제55조의2제2항제6호) 및 시행령(제92조의10)에 따른 별장
- ※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(F-2)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에
서 제외됨
- ④ 건축법시행령(별표1 제15호 ‘라’목) 및 관광진흥법(제3조제7호)에 따른 관광펜션

나. 투자금액 : 해운대관광리조트 7억 원 이상, 동부산관광단지 5억 원 이상

다. 시행기간 : 2013년 5월 20일부터 2018년 5월 19일까지

6. 경기 파주 통일동산 지구

[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범흥리 일원]

가. 투자대상

「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(舊 특정지역 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)」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‘통일동산’ 내의 부동산 중 건축법시행령(별표1 제15호 ‘나’목) 및 관광진흥법(제3조제2호 ‘나’목)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

나. 투자금액 : 5억 원 이상

다. 시행기간 : 2015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

●국방부고시제2015-389호

국방·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

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“국방·군사 시설사업”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.

2015년 10월 30일

국 방 부 장 관

- 1. 사업의 명칭 : 6군단 300포병대대 A포대 차양대 신축공사 등 3개사업
- 2. 사업의 개요 :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
- 3.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, 사업시행기간

사업명	사업위치	공부상면적 (㎡)	사업면적 (㎡)	사업시행기간
6군단 300포병대대 A포대 차양대 신축	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61	20,717	1,219	‘15.11. ~ ‘16. 4.30
6군단 300포병대대 B포대 차양대 신축	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163	2,469	1,188	‘15.11. ~ ‘16. 4.30
6군단 300포병대대 C포대 차양대 신축	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219	46,290	1,570	‘15.11. ~ ‘16. 4.30